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59 발의연월일: 2025. 4. 23.

발 의 자:이춘석·한병도·윤종군

윤준병 · 서영교 · 김윤덕

정준호 • 서미화 • 임호선

이연희 · 임미애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없되, 예외적으로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음.

현재 대도시나 수도권에 민간 의료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의 의료 공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보편적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으로 기부금 품의 모집·접수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라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방의료원은 「기부금

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 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등)①「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으로서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방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1항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 는 폐지 등의 의견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료원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하고, 통보받은 자는 그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료원의 장에게 제3항 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등)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으로서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방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을확보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수 있다.② 제1항의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1항의 특례의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료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

- 고, 통보받은 자는 그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 단체 및 지방의료원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 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